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12. 31.(금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부서 도시경제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광호, 사무관 이용관, 주무관 이지태 • ☎ (044) 201-4842	
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	담 당 자	• 실장 유영화, 연구위원 구영성 • ☎ (031) 389-6367	
담당부서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	담 당 자	• 실장 이종명, 팀장 박채웅 • ☎ (02) 6050-3181	
보 도 일 시	2021년 1월 3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자율주행 안심순찰 · 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

-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…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가능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**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**(이하 규제샌드박스)* **안건**으로 서울, 세종, 포항,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**스마트 서비스**를 **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**를 거쳐 **승인**하였다.

*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(기간·장소·규모)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·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

○ 이번에 **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**이 승인되면서 '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, **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·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**가 해소되었다.

□ **책임보험 가입, 실증사업비 적정성** 등의 검토를 거쳐 **'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**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○ **서울 관악구**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'**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**'(관악구청 컨소시엄)를 **실증**한다.

- **자율주행 기능**을 갖춘 **순찰로봇**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,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, **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**하는 서비스를 통해 **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**해져 주민들이 보다 **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**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**'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'**(뉴로다임)는 **제주시**에서 **실증**하게 된다. 교차로에 설치된 **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**하고 **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**하여,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**고정형 신호등 체계**를 **개선**하게 된다.

- 이를 통해 **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**하고 **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된다.

○ **세종시**에서는 **'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'**(아이티에스)을 **실증**한다.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**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**하여, **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**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.

○ **포항**에서는 **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***(포티투닷)가 **실증**된다.

-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**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**으로 전망된다.

*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로, 승객이 플랫폼(App)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·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

□ 보다 신속하게 **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**를 적용하고 **기업들의 편의를 증진**시키기 위해 **제도운영 방식**도 **일부 개선**된다.

○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, 올해부터는 **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**할 수 있게 된다.

* '22년 1분기에 대한상의 지정을 시범운영하고,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'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

-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**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,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: http://smartcity.kaia.re.kr/sandbox, 대한상의: http://sandbox.korcham.net)

○ 규제특례 내용이 **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**는 **안건 신속처리제도**(패스트트랙)를 **활용**하여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**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**이다.

○ 또한 **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**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신청기업들을 지원**하기 위해 **교통·물류·에너지·의료 등** 다양한 기술 분야에 **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**하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**김복환 도시정책관**은 "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**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용관 사무관(☎ 044-201-48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제5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**

신청내용	특례내용	기대효과
ㅇ **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** (관악구청 컨소시엄) (실증지역: 서울 관악구) ·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탑재카메라, 마이크를 통해 영상,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분석 및 위급상황 시 신속대응 서비스 실증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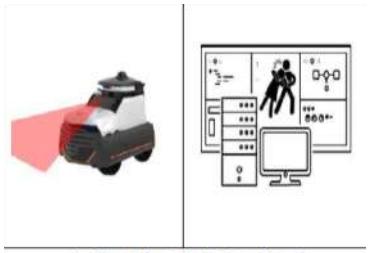 순찰 및 실시간 감시	ㅇ (**개인정보보호법**) 이동형기기의 영상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'영상정보처리기기'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불가 → 자율주행로봇 운용 시간·장소 등 사전 공개, 영상촬영 시간·범위 최소화,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 (**도로교통법**) 자율주행 로봇이 '차마'에 해당하여 보도통행이 불가 → 실내안전성 테스트 완료, 충분한 보도폭 확보, 자율주행 안내표지 부착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 (**공원녹지법**)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통과할 경우 중량(30kg)제한이 있음 → 공원이용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허용	· 방범취약지역에 24시간 운영가능한 순찰로봇을 배치· 운영하여 최소 인력으로 방범효과 극대화 · 도심지 적용이 가능한 방범순찰 자율주행 로봇 기능 개발 및 효과 검증 · 향후 주정차 위반 단속, 불법광고물 파악 및 단속, 쓰레기 등 적치물 파악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 가능
ㅇ **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실증** (뉴로다임) (실증지역: 제주시) ·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,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 실증	ㅇ (**도로교통법**)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상 '실시간 신호제어' 방법에 신호시간을 주기단위로 규정하고 있어,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신호제어는 불가 → 영상검지기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지기 성능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득하여 실증 가능 	·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차량유류비 및 탄소 배출량 절감 · 향후 도난·수배차량 검색, 교통사고 감지 등과도 연계 가능

신청내용	특례내용	기대효과
ㅇ**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** (아이티에스) (실증지역: 세종시) · 광통신 적용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통한 신호제어기를 교차로에 설치하여 신호운영, 재난방송 안내 등 기능의 실증	ㅇ (**도로교통법**) 교통신호제어기의 통신방식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통신방식 이외의 방식을 적용을 할 수 없어 사업시행 불가 →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용 	· 기존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· 보다 빠른 통신방식 활용으로 향후 인공지능 실시간 신호제어기능과 연계 시 실시간 제어 효과 극대화 기대
ㅇ**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** (포티투닷) (실증지역: 포항시) · 수요응답형 합승택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변경해가며 운행하는 서비스 실증	ㅇ (**택시발전법**) 택시발전법에 의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가 → 이용자 실명 가입, 좌석 지정 기능 탑재, 안전 확보 계획 및 손해배상 방안 준수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 (**대기관리권역법**)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사용 불가 → 실증기간 중 친환경 대체 차량이 출시되어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, 기존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검토하는 조건으로 허용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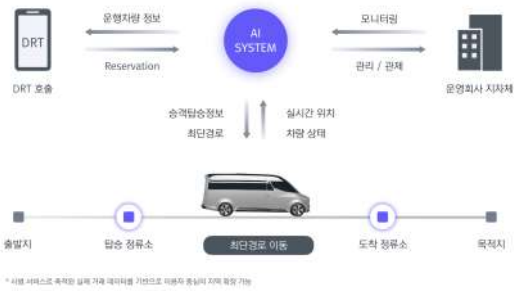	· 대중교통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절감 ·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대 ·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기대